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12.31폐지됨에 따라 당초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여성 위원이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 나. 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 중 현행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하던 것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제4호)
- 다. 회의록에 출석위원·심의안건·발언내용·결정사항 등 회의개최결과 기록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 라.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3. 참고자료

-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 광주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시행규칙
-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구)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서 동 근)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 “통합 조례”)가 2003. 12. 31폐지됨에 따라 당초 조례의 취지를 살려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③위원장은 광주광역시서구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이 되고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된 안은 회의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으며
-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로 추가 신설한 것은 뜻 있는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한 것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 ⇒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각각 개정 및 신설하는 안이며,

안 제7조(회의)

- ②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 ③위원회는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등 회의개최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로 각각 개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간사 및 수당)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으로써 문제는 “내”와 “안”이라 하겠습니까. “내”라 하는 것은 “기간 내에서”처럼 시간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이고, “안”이라 하는 것은 “범위 안에서”처럼 면적의 표시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자치입법편람은 물론 일반적인 입법례에서도 “내”와 “안”을 모두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정안도 이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조례”의 취지를 살려 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 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